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01

발의연월일: 2025. 4. 7.

발 의 자: 백혜련 · 김영환 · 박상혁

한준호 · 홍기원 · 남인순

김기표 • 박희승 • 박지원

이원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종별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차별적 고용 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과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평가와 명단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 근로자 고용 및 임금 현황에 한정되어 있어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한계가 있 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직종별·직급별·성별 사용 비율, 성별 육아휴직 사용 근 로자의 5년 이상 근속 비율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2에 제2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6(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현황 공시) ① 상시 10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직종별·직급별·성별 사용 비율, 성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5년이상 근속 비율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사용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22조의6(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현황 공시) 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
	는 사업의 사업주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에 따른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직종별・직급
	별・성별 사용 비율, 성별 육아
	휴직 사용 근로자의 5년 이상
	근속 비율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
	<u>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9조(과태료) ① ~ ③ (생	제39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략)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4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5의2.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
	여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
	립 지원제도 사용현황을 공시
	<u>하지 아니한 자</u>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